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19. 1. 15. / (총 20매)	담당부서	자살예방정책과
과 장	장 영 진	전 화	044-202-3880
담 당 자	배 인 정		044-202-3882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 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1.15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16일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 *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 (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 (자살유발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살위험자* 구조)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

*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9조의3제2조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

*** 요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
-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②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
 - (공익광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 요청
 -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방송법 제73조제4항)
 - (상담번호 송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 송출 노력
 - *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 개통('18.12.27)
- ③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

-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당사자 동의 전제)
 - (지원 내용 확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
-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한편,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

※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붙임1> 자살예방법 개정안

<붙임2> 자살예방법 개정안 관련 Q&A

<붙임3>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포스터

붙임1 자살예방법 개정안(주요내용)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 13. (생략)

③·④ (생략)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 14. (현행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

② ~ ⑤ (생략)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공익광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

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

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신 설>

- 2. 요청 일시 및 목적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가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자살자의 유족-----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

② ----- 자살자의 유족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생략)

<신 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

<p><신 설></p>	<p>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p> <p>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6조(과태료)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	--

붙임2 자살예방법 개정안 관련 Q&A

1. 개정안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자살유발정보는?

- 자살유발정보는
 - ▶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 해당 물건을 자살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판매 또는 활용하는 정보를 의미
 -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입니다.
- 마목의 경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할 수 있는 형태의 자살유발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가, 나, 다, 라 목에 준해서 명백하게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입니다.
-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일(7.16) 이전까지 경찰청·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자살유발정보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해외사이트에서의 유통은?

○ 외국인, 해외사업자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 해외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내국인이 유통하는 경우 국내·해외 사이트 관련 없이 처벌 대상

○ 다만, 해외 사이트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 가능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 개정된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구조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와 거부할 때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며, **보유한 정보에 한해 제공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제19조의3제2항에 열거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중 **보유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를 구조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연락해야 할 담당자를 찾지 못하여 구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입법례를 참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신고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 (참고)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의무 부과(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4. 긴급구조대상자의 범위는?

- 긴급구조대상자는 자살위험자 중에
 - ▶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 ▶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 ▶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

- 이 중 3호의 경우 자살위해물건을 **자살의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명백한 자살의 의도가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규정입니다.
- 즉, 자살위해물건을 **자살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긴급구조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3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